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9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서미화·안규백·이기헌

황정아 • 조인철 • 박지원

이재관 • 박정현 • 이병진

이연희 · 한병도 · 강준현

박희승 • 박해철 • 채현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 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 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 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1형 당뇨병 환자 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 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이하 "당뇨병 관리기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등을 판매한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고 한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당뇨병 관리기기등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준요양기관, 보조 기기를 판매한 자나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로 한다.
제96조의4제4항 중 "청구한 자"를 "청구한 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3호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등 판매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이하 "당뇨병 관리기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있다. ②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이하이 조에서 "판매자"라고 한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범위,방법,절차,제2항에 따른판매자의 보험급여 청구,공단의 적정성성심사 및 그밖에 필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 본 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

<u> 정한다.</u>	
세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	
업자·당뇨병 관리리기등 판매	
<u>업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u></u> 준요양기관,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나 당뇨	
병 관리리기등을 판매한 자	

9 하 사항은 보거보지부런ㅇㄹ

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 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 ③ (생 략)

-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 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u>청구한</u> <u>자</u>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 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 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 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 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

 (조 전 (천 체크 기· O)
④·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청구한</u>
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한 보
험급여를 청구한 자
<u>.</u>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은 <u>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u> <u>판매업자</u>

4. (생략)

② ~ ④ (생 략)

-----<u>준요양기관,</u>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당뇨병 관리기 기등 판매업자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